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59

발의연월일: 2021. 6. 7.

발 의 자:고민정·오영환·송재호

홍정민 · 김승원 · 이규민

윤준병 • 이용우 • 조오섭

김정호 · 이형석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, 청소년시설, 학원 등의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.

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공분을 산 바 있음. 하지만, 현재 산후조리도우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음. 민간 타 업체에 비해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한 서비스 수요자인 산모와 그 가족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자격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

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되 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3제1항제26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78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6.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. 이 경우 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.

제29조의4제1항제3호 중 "제25호에"를 "제25호 · 제26호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취업제한을 적용받거
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법률 제17784호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) ① 법원은 아동학대 제한 등) ① -----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 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 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 부터 일정기간(이하 "취업제한 기간"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 하 "아동관련기관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 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취 업제한명령"이라 한다)을 아동 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 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

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 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 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
1. ~ 25. (생 략) <신 설>

② ~ ⑦ (생 략)

제29조의4(취업제한명령을 선고 전반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·확인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

1. ~ 25. (현행과 같음)
<u>26.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8</u>
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
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
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. 이
경우 직접 산후조리도우미
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
<u>한정한다.</u>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9조의4(취업제한명령을 선고
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
검・확인) ①

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 상 점검·확인하여야 한다.

- 1. 2. (생 략)
- 3. 보건복지부장관: 제29조의3 제1항제1호·제7호·제9호· 제10호·제11호·제23호·<u>제</u> 25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
- 4. ~ 6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 1.·2. (현행과 같음)
1.·2. (현영과 실금) 3
J.
<u>제25호 • 제26호에</u> -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